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 | |
|--------|-----------|
| 선 람 | 기관(부서)의 장 |
| | |

제672호 2023. 2. 01.(수)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 고창군 고시 제2023-22호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고수면) 모집 재공고 2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6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6
- 고창군 공고 제2023-162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2
- 고창군 공고 제2023-177호 2023년 고창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공고 30
- 고창군 공고 제2023-192호 2023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 44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고창군 고시 제2023 - 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6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 제15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창 군 수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

- 1. 사업의 명칭 : 고창읍 읍내리 도시형생활주택
-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 상호명 및 대표자 : (주)무궁화신탁 최병길, 권준명
- 3.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68번지 외 2필지
- 4. 사업개요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비고 |
|----------------|--|----|
| 공동주택 [연립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762㎡ ▪ 연 면 적 : 8,776.6143㎡ ▪ 층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지상5층, 102동~105동 지상6층 - 106동(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2층 ▪ 규 모 : 4개동, 76세대(주차 113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76세대 - 기타 부대 복리시설(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 |

- 5. 사업시행기간 : 2019. 10. ~ 2023. 2.
- 6. 변경내용
 - 106동(근린생활시설) 내부 평면 및 입면 변경
 - 도시가스 정압기 배치도 표기

고창군 고시 제2023 - 22호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고수면) 모집 재공고

고창군에서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고수면)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8일
고창군수

1. 모집인원 : 1명

① 근무예정 장소 및 지역제한

| 구 분 | 근무기간 | 선발인원 | 근무 예정 장소(대기실) | 비고 |
|-----------|---------------|--------------|-------------------|---|
| 봄철 진화대 | 02.01.~05.15. | 업무보조요원 1명 | 산림공원과, CCTV영상실 | 컴퓨터 사용가능자 우대 진화대 및 감시원 근태관리, 산불 CCTV관리, 산불담당자 업무보조 |
| | | 19명 | 산불대기실, 관내 | 산불예방사업 추진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진화 산림사업업무 보조 및 담당자 지시 사항 등 |

2. 종사업무

- 가. 산불방지제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다. 인화물질제거 및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라.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업무 보조
- 마.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 보조 및 지원

3. 신청서 접수

- 가. 접수 기간 : 2023. 01. 28.(토) ~ 2023. 01. 30.(월) 17:00시까지
- 나. 접수 방법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접수 및 고수면사무소 방문

4. 모집방법 : 1차(서류전형) 2차(체력검정)

- 가. 서류전형 : 2022년 사업참여 포기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배제 대상자는 사업참여 불가

나. 체력검정

- 검정 일시 : **추후공지**
- 검정 장소 : 공설운동장 (고창읍 운동장길 36) (시행기관 및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업무 보조원 선발 : 업무특성에 따른 별도 기준표 적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문자 또는 유선통보

※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가. (재)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나. 제한사항

- 사업추진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지체,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기타 산불진화, 예방에 부적격자)
 - ※ 신체검사서 상 응시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제외
- 일모아시스템상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 제한(재공고시 감점하여 선발 가능)
-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 ※ (**원칙**)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반복참여(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예외적 허용**

6. 신청서류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에 한하여 접수 효력 발생(서류미비 시, 접수 반려)

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위치정보활용동의서([붙임1, 2, 3]참고) : 필수

나.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 필수

다. 운전면허증+차량·원동기등록증(운전가능여부 및 차량, 원동기 소지 확인용)

라. 구직등록확인증(고창고용복지센터 발급(고창읍 중앙로 330)) : 필수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증명서 대응) : 필수

사. 6개월 이내 신체검사서(병원 및 의료원 등 발급) : 필수

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이수증(최근 5년(2018~2022년)에 한하여 인정),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선발기준 및 유의사항

가.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 : [붙임4]참고

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이수증은 최근 5년, 2018~2022년에 한하여 인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다.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경고장 발부 등)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근로조건

가. 인부임 단가

- 인건비 : 76,960원/1일

나.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원칙,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산불예방을 위하여 휴일 연장근무 가능
 - **업무특성상 토요일 무조건 근무로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하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시행기관에서 기상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주·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라. 근무기간 : 2023년 02월 01일 ~ 05월 15일 (확정일자 아님 시행기관 및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9. 기타사항

가.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체검사서에 따라 사업 참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배제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선발요건을 충족하는자 중 순위에 따라 미선발된 자는 결원 발생 시 우선 선발 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며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아. 1세대별로 1인만 사업신청 가능하며 타사업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참여자는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차.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시행청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따릅니다.(「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의견 조회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5. 선발배점 기준표 1부.
6. 선발배점 기준표(업무보조) 1부. 끝.

【붙임 2】 본인 및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료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고창군수 귀하

본인 및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 작성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본인 정보 | | | | | |
|-----------------|--------------|---|-------------------|-----------------|--|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책정일 |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참여구분 | 국세청 | 소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 제3자 | | |
|----------------|----------------------|---|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 <u>한국고용정보원</u> | <u>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u> | <u>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u>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무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 | | |
|---|------------|-----|--|
| 예 | 이름 (서명) | 아니오 | |

본인만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선택항목 동의 | 이름 (서명) | 미동의 | 이름 (서명)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이름 (서명) | 미동의 | 이름 (서명) |
|----|---------|-----|---------|

본인만 작성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
|----|----------|-----|----------|
| 동의 | 이 름 (서명) | 미동의 | 이 름 (서명) |
|----|----------|-----|----------|

【붙임 3】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고창군수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 | |
| | 전화번호 | 560-2588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본인은 2023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인 |
|-----------------------|----------|

고창군수 귀하

【붙임 4】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불가능한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u>중위소득 60%</u>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15세~만34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이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부모가족 지원법 의한 보호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매매피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성가장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 padding: 5px;">구 분</th> <th colspan="2" style="padding: 5px;">첨 부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공통사항</td> <td colspan="2" style="padding: 5px;">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td> </tr> <tr> <td rowspan="9"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middle;">선택사항</td> <td style="padding: 5px;">부모 부양시</td> <td style="padding: 5px;">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td> </tr> <tr> <td style="padding: 5px;">가출·행방불명</td> <td style="padding: 5px;">실종신고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장애</td> <td style="padding: 5px;">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 지급통지서 중 1</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질병</td> <td style="padding: 5px;">의사의 진단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군복무</td> <td style="padding: 5px;">복무확인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학교 재학</td> <td style="padding: 5px;">재학증명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교도소 입소</td> <td style="padding: 5px;">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 </tr> <tr> <td style="padding: 5px;">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 <td style="padding: 5px;">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혼소송 제기</td> <td style="padding: 5px;">이혼소송확인서</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타 가족 생계 부양</td> <td colspan="2" style="padding: 5px;">통·반장의 확인서</td> </tr> </tbody> </table> |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 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 구 분 | 첨 부 서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 지급통지서 중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기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갱생보호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기간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붙임 5】

선발배점 기준표

| 항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
| 산림분야 종사경력(10) | 산불진화대, 산불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자(8) 경력자(10) | |
| 근무여건(10) | 근무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소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0) 자동차 및 이륜차 소지(10) | |
| 기술교육 이수 여부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15) | 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 이수증, 산림분야 자격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0) 교육이수증 2개 이하(10) 교육이수증 3개 이상 또는 관련자격증소지자(15) * 교육이수증 : 최근 5년 (2018~2022년)에 한하여 인정 | |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20) | 부양가족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배우자 :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거주조건 : 주민등록본상 동거인 (연령 및 거주 조건 모두 충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 아님 또는 부양가족 없음(10) 부양가족 3명 이하(15) 부양가족 3명 초과(20) | |
| 취업취약 계층 유무 (10) | 취약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5) 해당있음(10) | |
| 과거 근무태도 등 (15) | 성실성 및 참여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0) 보통, 미참여자(8) 양호(15) | |
| 체력검정 및 건강상태 (20) | 등짐펌프 메고 2km 달리기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배점 ※ 신체검사서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분 이내(20) 15분 이상 ~ 16분 이내(16) 16분 이상 ~ 17분 이내(14) 17분 이상 ~ 18분 이내(12) 18분 이상 ~ 19분 이내(10) 19분 이상 ~ 20분 이내(8) <p>20분 이상 (미선발)</p> |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감점(-50)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재공고 시 감점적용하여 선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자산 기준초과자(-50) | |

※ 체력검정 배제자는 산불진화작업에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미선발함.

【붙임 6】

선발배점 기준표(업무보조)

| 항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
| 산림분야 종사경력(10) | 산불진화대, 산불감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자(8) 경력자(10) | |
| 근무여건(10) | 근무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소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0) 자동차 및 이륜차 소지(10) | |
| 기술교육 이수 여부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20) | 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 이수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0) 교육이수증 2개이하(7) 교육이수증 3개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20) * 교육이수증 : 최근 5년 (2018~2022년)에 한하여 인정 | |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20) | 부양가족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 거주조건 : 주민등록본상 동거인 (연령 및 거주 조건 모두 충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 아님 또는 부양가족 없음(10) 부양가족 3명 이하(15) 부양가족 3명 초과(20) | |
| 취업 취약 계층 유무(15) | 취약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8) 해당있음(15) | |
| 과거 근무 태도 등(15) | 성실성 및 참여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0) 보통, 미참여자(8) 양호(15) | |
| 체력검정(10) | 등짐펌프 메고 1km 달리기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분 이내(10) 30분 이상(5) |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감점(-50)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재공고 시 감점적용하여 선발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자산 기준초과자(-50) | |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의 배점 기준표 적용함.

고창군 공고 제2023 - 161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기능 강화

2. 주요내용

-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지원 기준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948, Fax 560-244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063-560-29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3. 1.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관광산업과장

1. 개정이유

-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기능 강화

2. 주요내용

-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지원기준 변경(안 별표)

| 기 존 규 칙 (별표) | | | | 개 정 (안) | | | |
|--------------|---------|------------------|-------------|---------|---------|------------------|-------------|
| 구 분 | 지 원 기 준 | | 지 원 금 액 | 구 분 | 지 원 기 준 | | 지 원 금 액 |
| 숙박관광 | 내국인 | - 30명 이상 | -1인당 : 10천원 | 숙박관광 | 내국인 | - 25명 이상 | -1인당 : 10천원 |
| | |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 | |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
| 그날관광 | 내국인 |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숙박관광 | 내국인 |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 | |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 | |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
| 그날관광 | 내국인 | - 25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숙박관광 | 내국인 | - 2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 | |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 | | |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2023. 1. 19. ~ 2023. 2. 2.)
- 라.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4. 따로붙임

- 가. 일부개정규칙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숙박관광과 그날관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비고 |
|----------|-----|-------------------------------------|--------------------------------------|----|
| 숙박 관광 | 내국인 | - 25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 |
| | |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 |
| | 외국인 |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 |
| 그날 관광 | 내국인 | - 2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
| | |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
| | 외국인 | - 10명 이상 | -1인당 : 5천원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
| 숙 박 관 광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숙 박 관 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 | 외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외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 당 50% 추가 지급 |
| 그 날 관 광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 | 내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그 날 관 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 | 외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외 국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 5천원 |

고창군공고 제2023-162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업 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인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상 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금의 설치, 기금의 구성에 관한사항 (안 제1조 ~ 제4조)
- 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다. 기금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라. 기금 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 마. 대상품목, 지원대상, 최저가격 결정·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20조)
- 바. 지급기준, 지원금 회수, 기금 결산,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제2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9. ~ 2023. 2. 7.(20일간)

4. 의견제출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참조 : 농촌활력과장, 주소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695, Fax 560-2529, E-mail : gksrlf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063-560-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써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산비 중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되는 해당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유지되도록 필요시 추가 전입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

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1. 고창군 의회 의원
- 2. 관내 농협 조합장
-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 4. 기타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 3. 최저가격 결정
- 4.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대상품목)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수박, 배, 배추, 고추, 양파, 무로 한다. 다만, 제9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고창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품목당 1,000㎡ 이상(시설하우스의 경우 330㎡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상한면적은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시설하우스는 2,700㎡) 이내로 한다.

제17조(최저가격 결정) ①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생산비 관련 자료, 도매시장가격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최저가격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위면적당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재배·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금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준가격의 1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최저가격 등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 등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기준) ① 차액 지급기준은 대상품목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급한다. 단, 지원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별로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참여조직)과 계통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약정된 농산물을 계약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고 제2023 - 177호

2023년 고창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공고

고창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고 창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 일반가정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3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신청기간

2023. 1. 25.(수) ~ 2. 28.(화) 09:00 ~ 18:00

※ 단, 설 연휴,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대리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환경위생과(방문접수)

지원대상 및 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우선순위

- | |
|--|
| <p>◎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2.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3.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공급자*)
 -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온라인 구매 설치(교체) 등

○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온라인[제1호서식], 오프라인[제2호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 다만, 제③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생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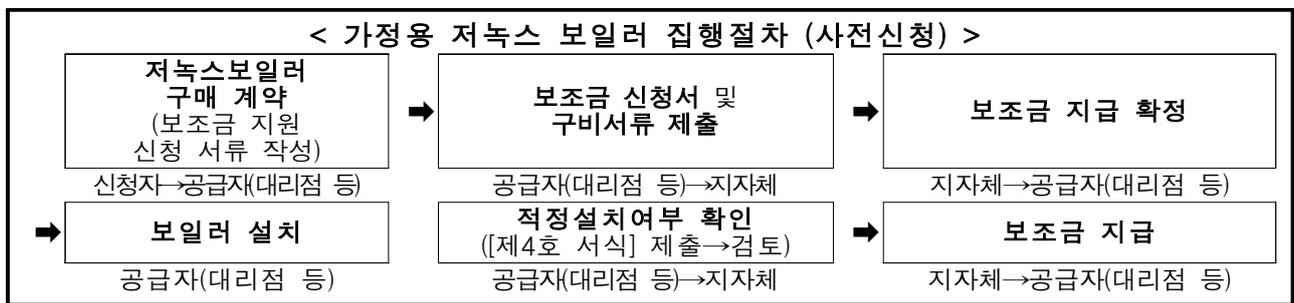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 보조금 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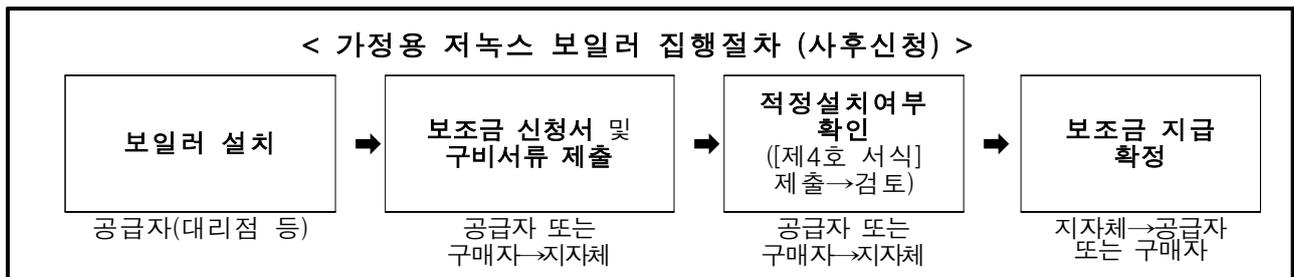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온라인 신청[제1호 서식] 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2호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 환경위생과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 의 :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5)

- 붙임
1.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제1호서식(온라인신청서)]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제2호 서식]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제3호 서식]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6호 서식]
 6.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제7호서식]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용]

(앞쪽)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 | |
|--|---|--|-----------------|
| 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
| | 주소 | (주소) () (보일러 설치주소*) * 실거주지와 설치주소가 다른 경우 | |
| 보조금 입금 희망 계좌정보 |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10만원 (일반) [] | | 60만원 (저소득층) [] |
| 주택소유자 동의 여부 (세입자의 경우) |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금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 |
| |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 환경부, 관할 행정기관 |
| |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5년 | | |
|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지급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세입자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위임사항 (해당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확인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공급자) ()에게 위임합니다. |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일러 설치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조금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공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장 귀하 | | |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 | 보유기간 |
|-------------------------|---|------------|-----------|
|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내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정보(DB) 관리 및 통계에 활용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종료 후 5년 |

2023.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 일반 건축물대장 |
| | 집합 건축물대장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
| |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

210mm×297mm(백상지 80g/㎡)

[제2호 서식, 방문신청용]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 | |
|--|-------|--|--|
| 사업명 | |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
| 신 청 인 | 성 명 | 연락처 | |
| | 주 소 | | |
| 설치주택 개요 | 소 유 자 | 연락처 | |
| | 주 소 | | |
| 보일러 교체 개요 | |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일러 교체 / <input type="checkbox"/> 신축건물 신규 설치 | |
| 지급요청금액 | | <input type="checkbox"/> 10 만원 : 일반 / <input type="checkbox"/> 60만원 : 저소득층 | |
| 보조금 신청 방법 | | <input type="checkbox"/> 사전 신청 / <input type="checkbox"/> 사후 신청 | |
| 입 금 희망은행 | 은행명 | | |
| | 예금주 | | |
| | 계좌번호 | | |
| <p>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할 행정기관 귀하</p> | | | |
| <p>【위임사항】</p> <p>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p> <p>-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p> | | | |
| <p>※ 구비서류</p> <p>①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②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p> <p>③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④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p> <p>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p> <p>⑥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⑦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p> <p>※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필요(별도 동의서 제출 없음)</p> <p>⑧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1부.</p> <p>※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6호 서식)시 생략 가능</p> | | | |

[제3호 서식, 방문신청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 |
|---------------|-------------------|
| ○ 제작사 : | ○ 판매사 : |
| ○ 모델명 : | ○ 보일러용량 : Kcal/hr |
| ○ 제조번호(S/N) : | ○ 설치대수 : |

2. 설치일자 : 2023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제7호서식 목록제출"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 | |
|---------------|---|
|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 시공자 -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
|---------------|---|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제7호 서식, 방문·온라인 신청용]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일괄신청 대리인 :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00건설)

| 사업명 | 설치한 곳 | 신청인 | 동의여부(서명) |
|------------------------------|----------------------------|-----|------------------|
| | | | 계좌번호 |
| 예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서울시 00동 00아파트 101동 101호 | 홍길동 | 서명날인 |
| | | | 0000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창군 공고 제 2023-192호

2023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한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3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나.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 (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9호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조기집행 시 기간단축)

라. 사업비 : 8,433천원

마. 사업량

(단위 : 대, 원)

| 구분 | 사업량 | 계 | 국비(30%) | 도비(9%) | 군비(21%) | 자담(40%) |
|---------------|---------------------|-----------|---------|--------|---------|---------|
|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 구명조끼 등 다수(예산범위내) | 8,433,000 | 2,530 | 759 | 1,771 | 3,373 |

※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바. 사업내용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구명·항해 등 안전장비 지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연안·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의 구매(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3. 지원품목

가.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나. 자동소화시스템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 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다.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적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마. 어선법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 전기(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각종 계기류 등), 구명(구명부환, 사다리 등), 소방(고장·이동·휴대·투척식 등 소화기 등), 항해(레이다반사기, 항해용레이다, 위성항법장치, 기적 등), 무선설비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기관·전기·구명·소방·항해 등 장비 사업 사업자선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허가어업 어선→면허어업 등 어선 순, 동일 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나. 지원제외 대상

- 1)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2)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3)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다. 사업자 선정 완료 후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 라.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
-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하되, 구명조끼(구명외) 미비치시 구명조끼(구명외)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다음해 지원할 경우 과거 지원품목의 2개 추가 지원 가능

6.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3년 2월까지(접수 미충족 시 연장)
-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7. 기타사항

- 가.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고 창 군 수

【공통 제1호서식】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신청서

| | | | | | | |
|---|---------------|-------------------|--------------------|------------|------|----------|
| 신청자 | 단체 등의 명칭 | | | | |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 종사경력 | 년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 | | |
| | 어선명 (어선번호) |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면허 | | | | |
| | | 종류 | 허가·면허 번호 (허가기관) | | | |
| 사업비 (천원) | 계 | 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 |
| |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 | | | | | |
|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 | | | | | |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 자 산 | | | 부 채 | | |
|-----|-----|-----|-----|-----|-----|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 수 입 | | | 지 출 | | |
|-----|-----|------|-----|-----|------|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

9. 사업비 명세

|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